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9. 1.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 8. 22.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8. 8. 25.
- 다. 상정일자 :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8. 9. 1)
상정, 심사,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용근 도시디자인과장)

가. 제안이유

- 마포구의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고품격 디자인 도시로 조성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둠(안 제3조)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
-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안 제4조제1항 내지 제2항)

- 위원은 건축·도시계획·조명·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디자인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도시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주민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함(안 제4조제3항)
- 소위원회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의견청취
 -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수당 등
 -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다.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

3. 검토보고의 요지 (한두호 전문위원)

- 본 조례 안은 2008년 2월 14일자로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됨에 따라 마포구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정책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마포구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동 조례 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도시디자인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 소속하에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뉴타운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급변하는 도시환경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에 따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과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여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한 장기적 종합계획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물 외관디자인,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등 주요 도시공공 디자인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야간경관 기본계획 등 미래지향적인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및 기타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기구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한 것은 도시 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타당한 조치이며,
- 제정조례와 관련된 상위 법령인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과 자치법규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조례」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법하나,
- 현재 정부에서는 위원회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추세이므로 도시관리국소관 위원회중 도시디자인위원회와 연관성이 있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도시디자인위원회 소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